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

의 안 번 호	제 2570호

제출년월일 : 2021년 2 월2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국내·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”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고문, 수석부회장 직 추가(제5조)

-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
-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

나. 임원 임기 연장 : 1년 → 2년(제6조)

다. 정기총회 횟수 조정 : 상·하반기(연 2회) → 연 1회(제7조)

라. 사무국 지위 승격 : 사무국 → 사무처(제14 ~ 15조)

마. 분과위원회 신설(제17조)

-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
-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제154조, 제15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현행규약 1부 : 규약전문 별첨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”을 “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, 감사 2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”를 “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부회장”을 “수석부회장”으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2년으로 하되,”로 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고문)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.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(종전의 제7조)제2항 중 “상·하반기 1회씩을”를 “연 1회를”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까지로 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4조(종전의 제13조)의 제목을 “(사무처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무국을”을 “사무처를”로, “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”를 “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, 시·군·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무국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무국”을 “사무처”로, “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”을 “내부운영 방안(방침)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5조(종전의 제14조)의 제목을 “(사무처의 업무)”로 하며, 각 호의 부분 중 “사무국은”을 “사무처를”로 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, 제16조를 제18조로,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9조(종전의 제17조)제2항 중 “사무국”을 “사무처”로 하며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분과위원회)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,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.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. 2. (생 략)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,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	제5조(임원) ① ----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 부회장 1인, 감사 2인, ---------- ----------. ② ---------- ----------. 1. ---------- ----------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 2. (현행과 같음) ③ 수석부회장은 ---------- ----------. (단서 삭제)
제6조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 ② (생 략)	제6조(임원 임기) ① ---------- 2년으로 하되,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제7조(고문)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.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(생 략)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,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·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/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,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. ③ ~ ⑤ (생 략)	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연 1회를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(안)
제8조 ~ 제12조 (생 략)	제9조 ~ 제13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
제13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,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	제14조(사무처) ① ---------- 사무처를 --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, 시·군·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사무처장---------. ③ 사무처---------- 내부운영 방안(방침)---------.
제14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1. ~ 6. (생 략)	제15조(사무처의 업무) 사무처는 -----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자문위원) (생 략)	제16조(자문위원) (현행 제15조와 같음)
〈신설〉	제17조(분과위원회)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제16조(재원) (생 략)	제18조(재원) (현행 제16조와 같음)
제17조(부담금) ① (생 략)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·관리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19조(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사무처-----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회계연도) (생 략)	제20조(회계연도) (현행 제18조와 같음)
제19조 ~ 제22조 (생 략)	제21조 ~ 제24조 (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)

【 관계법령 】

관계법령	❑ 「지방자치법」 **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 **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**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 **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**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협의회의 명칭 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**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**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

제정 2018. 10. 15.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고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민체감·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、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、연구
2.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
3.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·군·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、추진
4.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제4조(구성)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"별표"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,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.

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.
2. 협의회의 규모,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.

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,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,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
제6조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,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·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/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,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.

1. 회장 및 임원의 선출
2.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
3.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8조(회장단 회의)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(의안의 제출)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의 배부)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,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,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1. 총회,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
2.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,회계
3.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
4.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
5.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
6.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

제15조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.

제16조(재원)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시.군.구의 정기부담금

2. 특별부담금
3. 기타 수입

제17조(부담금)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.
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·관리하여야 한다.
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·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.

제18조(회계연도)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9조(예산 및 결산) ① 협의회의 세입·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.

제20조(감사 실시)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.
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·군·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21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2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정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.